

제2717호
2020. 3. 19.

발행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편집인: 홍보 전 산 과 장 김 건 태
 전화: 3396-4955
 (http://www.junggu.seoul.kr)

선	기관의장
람	

구 보

◎ 자치법규

[입법예고]

제2020-217호 : 서울특별시 중구 지하수 조례 전부 개정안 입법예고 2

◎ 공 고

제2020-203호 : 2020.1.1.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공고 5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55 / FAX.(02)3396-9022/3
 ●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람											
----	--	--	--	--	--	--	--	--	--	--	--



자 치 법 규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 2020-217호

「서울특별시 중구 지하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3월 1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지하수 조례 전부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상위법인 「지하수법」의 관련 조항과 다르게 규정되어있는 과태료 및 지하수관리위원회와 관련된 조례 내용을 개정하여 지하수 보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에 관한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안 제5호)
- 양수능력이 1일 200톤을 초과하는 경우 영향조사대상 지역을 반지름 0.7킬로미터로 확대 적용(안 제3조)
- 지하수관측정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삭제(「지하수법」 제17조 준용)
- 과태료의 징수에 관한 규정 삭제(「지하수법」 제41조 준용)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참조 : 중구청 치수과 지하수팀, 전화: 3396-6162, FAX: 3396-8855,

E-mail : lys21@junggu.seoul.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 서울특별시 중구 지하수 조례 전부 개정안 1부. 끝.

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지하수 조례 전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중구 지하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지하수의 수질보존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하수”란 지하의 지층이나 암석사이의 빈틈을 채우고 있거나 흐르는 물을 말한다.
2. “지하수영향조사”란 지하수의 개발·이용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예측하는 조사를 말한다.
3. “지하수보전구역”이란 지하수의 수량이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으로서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4. “양수능력”이란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동력장치, 토출관의 지름과 깊이 등에 비추어 보아 당해시설을 이용하여 양수할 수 있는 최대취수량을 말한다.

제3조(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 및 조사방법 등) 지하수 영향조사의 항목·조사방법 및 평가 기준은 「지하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다. 다만, 양수능력이 1일 200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지역을 개발예정지점을 중심으로 반지름 0.7킬로미터를 기준으로 한다.

제4조(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공고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지하수 보전구역의 지정·변경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영 제20조제6항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0일 이상 일반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지정·변경·해제에 따른 행위제한 내용
2. 지하수보전구역안의 주요 지점에 대하여 「지하수의 수질보존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지하수 수질의 주요 항목별 측정치
3. 그 밖에 지하수의 합리적 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주민 협조 사항

제5조(지하수관리위원회) 구청장은 영 제4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생활도시친화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제7조(임기) ① 위원회 위원 중 서울특별시 중구 소속 공무원인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이 그 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②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

제9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하수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0조(간사 및 수당 등)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무를 수행하고 심의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위원장의 보좌
2. 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보존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그 밖의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출석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2조(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사) 구청장은 영 제9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심사하는 경우 사전에 위원회 또는, 영 제4조에서 정한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공 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0-203호

2020.1.1.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공고

2020. 1. 1.기준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공시가격의 사전 열람가격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와 구청 및 주민 센터 민원실에서 열람하시고 필요시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3월 1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열 랐

- 기 간 : 2020년 3월 19일 ~ 2020년 4월 8일
- 장 소 : 구청 세무1과 및 주민센터 민원실
- 열람내용 :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

□ 의견제출

- 기 간 : 2020년 3월 19일 ~ 2020년 4월 8일
- 제출사항 : 용도지역 및 주 건물 구조 등 주택특성이 다르거나 관련 표준주택의 가격 및 인근주택 가격이 과도하게 높거나 낮아 가격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열람가격에 대한 의견을 제시
- 제출자 : 공시대상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 제출처 : 구청 세무1과 및 주민센터 민원실
- 제출방법 : 구청 세무1과 및 주민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소정의 양식(의견제출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을 작성하여 우편·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은 주택의 특성, 적정가격, 인근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공정하게 심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회신

※ 문의전화 : 중구청 세무1과 과표팀 [☎ 02) 3396 - 5152, 5154]

2020. 1. 1. 기준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안내

2020. 1. 1. 기준 공동주택가격(안)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하시고, 공동주택가격(안)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공동주택가격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기간 및 방법

○ (열람 및 의견청취기간) 2020년 3월 19일 ~ 4월 8일

* 공시 이전에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절차임

○ (방법)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방문 열람

□ 의견제출

○ (의견제출 기간) 2020년 3월 19일 ~ 4월 8일

○ (제출자) 공시대상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출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공동주택 소재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각 지사

○ (제출방법)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의견제출하거나 시·군·구(읍·면·동)에 비치된 소정양식(공동주택가격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을 작성하여 우편·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 처리결과 회신

○ 의견제출 공동주택은 공정하게 재심사하여 가격 등의 적정성 재검토 후 처리결과를 우편발송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회신 드립니다

* 의견제출 결과는 2020년 4월 29일부터 5월 8일까지 확인하실 수 있음

공동주택 공시가격 콜센터 ☎ 1644-2828